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246

발의연월일: 2024. 9. 24.

발 의 자:성일종·최수진·인요한

이헌승 · 송석준 · 이종배

서지영 • 유용원 • 백종헌

강대식 · 윤상현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발전에 따른 수출 증대로 인하여 해외로 수출되는 무기체계의 품질 검증이나 수출을 위한 기술 개량 목적의 시험 숫자와 빈도가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수출을 위한 검증·개량 목적 시험의 증가로 총포·화약 시험과 로켓 발사에 따른 소음, 추진제 연소 시험에 따른 분진·연무·비친화적 화학 냄새, 시험 특성상 안전을 위한 광범위한 해상 통제로인한 생업 및 조업 제한이 잦아지면서 국방과학연구소 시험장 주변지역 주민들의 부담 또한 증대됨.

또한 국방과학연구소가 방위산업체로부터 수출을 위한 시험을 의뢰 받을 때 방위산업체와 체결하는 용역계약의 법적 근거가 빈약하다는 지적 또한 제기됨.

이에 국방과학연구소가 수출 목적의 시험으로 생활에 제한을 당하

는 국방과학연구소 주변 지역민들의 지원과 수출 목적의 시험을 위한용역계약의 근거를 각 마련하고자 함(안 제7조제3항제3호 및 제4호).

법률 제 호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연구소가 개발한 병기·장비 또는 연구소가 보유하거나 발명한 산업재산권을 활용하여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위산업물자등을 수출하거나 민수용(民 需用) 제품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개발(개조 또는 개 량을 포함한다)·시험·사업화 및 기술지원과 위 활동이 이루어지 는 연구소 시험장 주변지역(시험장으로 인하여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소음 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이 포함된 면·동을 말한다) 지원 사업
- 4. 연구소의 연구시설·인력을 활용한 기술용역의 위탁·수탁 및 지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혂 했 개 정 아 제7조(사업) ① • ② (생 제7조(사업) ① • ② (현행과 같 략) 유) ③ 연구소는 제1항 각 호의 사 (3) ----업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 는 범위에서 국방부장관의 승 인을 받아 제1항 각 호의 사업 외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3. 연구소가 개발한 병기·장비 3. 연구소가 개발한 병기·장비 또는 연구소가 보유하거나 발 또는 연구소가 보유하거나 발 명한 산업재산권을 활용하여 명한 산업재산권을 활용하여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조제1항제1호 관한 법률 | 제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방위산업물자등을 수 에 따른 방위산업물자등을 수 출하거나 민수용(民需用) 제 출하거나 민수용(民需用) 제 품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필요 품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필요 한 연구·개발(개조 또는 개 한 연구·개발(개조 또는 개 량을 포함한다) · 시험 · 사업 량을 포함한다) • 시험 • 사업 화 및 기술지원과 위 활동이 화 및 기술지원 이루어지는 연구소 시험장 주 변지역(시험장으로 인하여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
	률」 제5조에 따른 소음대책
	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
	이 포함된 면・동을 말한다)
	<u>지원사업</u>
<u><신 설></u>	4. 연구소의 연구시설·인력을
	<u>활용한 기술용역의 위탁·수</u>
	<u>탁 및 지원</u>